

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[2003. 12. 15]
조례 제22호

개정 2005. 12. 2 조례 제 173호

개정 2008. 8. 6 조례 제 293호
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일부개정 2015. 10. 2 조례 제 601호
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22. 2. 4 조례 제1026호
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2. 2, 2008. 8. 6, 2015. 10. 2, 2022. 2. 4>
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2. 2. 4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5. 12. 2 조례 제173호)

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8. 6 조례 제293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로 한다.

⑫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(2015. 10. 2 조례 제60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

부칙(2022. 2. 4 조례 제1026호, 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